

2025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통합공고문 및 안내서

2025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장

목 차

I. 공고개요	1
1. 지원규모 및 내용	1
2. 추진절차 및 일정	2
II. 신청요건	4
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4
2. 신청 제한	4
3.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5
4.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5
5. 선정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청	6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보고	6
III. 신청방법	7
1. 공고 및 접수기한	7
2. 신청 방법	7
3. 제출 서류	8
4.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9
5.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9
6.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9
IV.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0
1. 평가 절차	10
2. 평가방법 및 기준	10
V. 향후 연구사업 관리	12
1. 협약변경	12
2. 중간보고	12
3. 최종평가	13
4. 성과관리	13
VI. 관련 법령 및 규정	15
VII. 문의처	15

I. 공고 개요

①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심의위원회 승인 연구기간 내에서,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 총 21개월 이내 지원

○ 지원분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 희귀·난치질환 등 다양한 환자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 검증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지원 : 선행사업 등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치료기술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지원

※ 각 사업별 상세 지원내용은 [별첨1]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구 분	공고단위(RFP 명)	지원 규모 (1차년도)	지원기간	지원대상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1.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0억원 이내/년 (7.5억원 이내)	2년 이내	보건복지부로부터 적합·승인통보를 받은 임상연구* ※ 고위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승인 필요
	1-2.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5억원 이내/년 (3.75억원 이내)		
	1-3.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3억원 이내/년 (2.25억원 이내)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2-1.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5억원 이내/년 (3.75억원 이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 및 제13조, 시행령 제11조~제13조, 복지부령 제9조, 총리령 제4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계획 작성 규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통보를 받은 임상연구 계획만 지원 가능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 RFP별 선정 예정 과제 수 및 연구 개발비는 정부 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임상연구계획 승인	재생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심의 결과 통보
신규과제 공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신규과제 신청·접수	적합 및 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계획만 신규과제 신청 가능
선정평가	사전검토, 선정평가, 운영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쳐 선정과제 확정 및 선정결과 공고 진행
협약체결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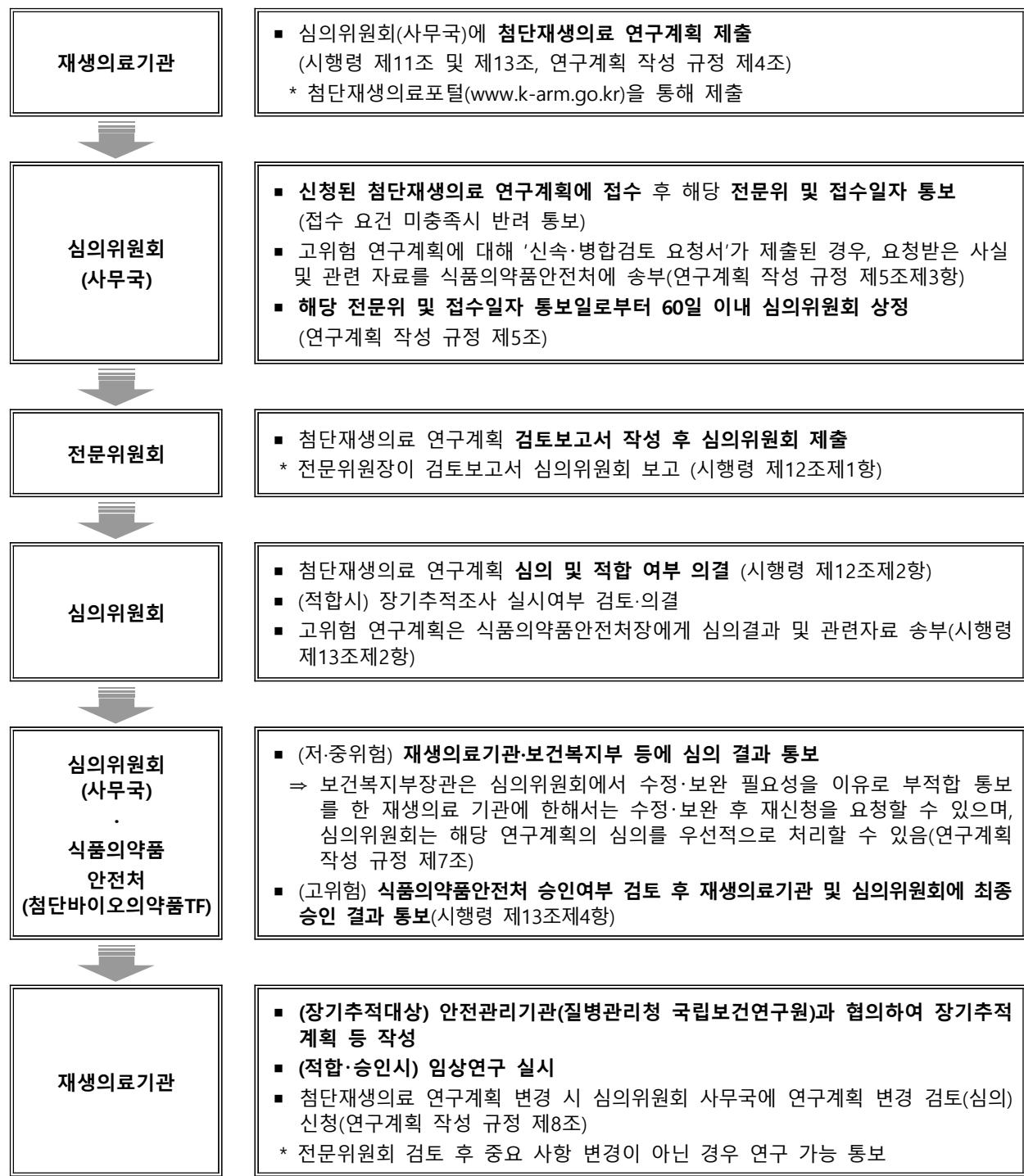
○ 추진일정

2025. 5. 27.	'25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2025. 7. 1.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제출(전산입력) 마감(~16:00)
2025. 7. 1.	신청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마감(~16:00)
2025. 7월 초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2025. 7월 초	평가 일정 사전 안내,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2025. 7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5. 7월 말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결과 공고
2025. 7월	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상연구 실시 절차

- 법 제12조 및 제13조, 시행령 제11조~제13조, 복지부령 제9조, 총리령 제4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계획 작성 규정”)」 제4조~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출처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05,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II. 신청 요건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법 제10조 및 복지부령 제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필요
 - 법 제10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실시기관으로 협약이 불가능한 경우 연계된 대학(산학협력단)으로 지원 가능
 - ※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해당 실시기관 소속임을 증빙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 이직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②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임. 공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임
 -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 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p>※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p> |
|---|

③ 연구시설 · 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④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⑤ 선정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

- 선정평가 시 제출된 연구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시 연구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적합 통보된 임상연구 계획에 대해 사업단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⑥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보고

- 임상연구 정보의 등록 및 기록의 보고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임상연구에 대한 과제개요 등 관련 정보 및 진행 중인 임상연구에 대해 임상연구 진행사항, 연구대상자의 등록 및 증례기록, 이상반응의 발생 현황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보고 · 공개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III. 신청 방법

① 공고 및 접수 기한

공고대상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검토·승인 마감일시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1.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025. 7. 1.(화) 16:00	2025. 7. 1.(화) 16:00
1-2.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3.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2025. 7. 1.(화) 16:00	2025. 7. 1.(화) 16:00
2-1.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②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 후 화면 중간의 Quick Menu에서 ‘사업공고’ 클릭하여 전산입력,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과제신청 시 신청기관(등록) 및 참여 연구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 참여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등록정보가 현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 연구자 정보시스템’에서 갱신 필요
- 전산입력 시 과제명, 요약문, 연구개발기관 정보, 연구자 인적사항, 참여연구원, 연구비 등을 입력 후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

※ 전산입력 시 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사용 매뉴얼 참조

③ 제출 서류

- 접수 시 모든 서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첨부문서로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미비 시 과제접수 불가
- * 임상연구 계획 적합 통보서(공문)를 받지 못한 경우 심의 신청서로 제출 가능. 단, 7.4.(금)까지 적합 통보서(공문)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

구분	제출 서류(첨부파일)	
필수	첨부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적합 통보서(공문) 및 임상연구계획서
	첨부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첨부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첨부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첨부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첨부7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주관연구책임자의 3책5공 확인)
	첨부8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첨부9	임상연구비 세부내역서
	첨부10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해당시	첨부1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제공·활용 동의서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사업에 해당)
	첨부12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통보서
	첨부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첨부14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첨부15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를 활용하여 평가

④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 RFP 및 관련 · 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비 결정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6]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⑤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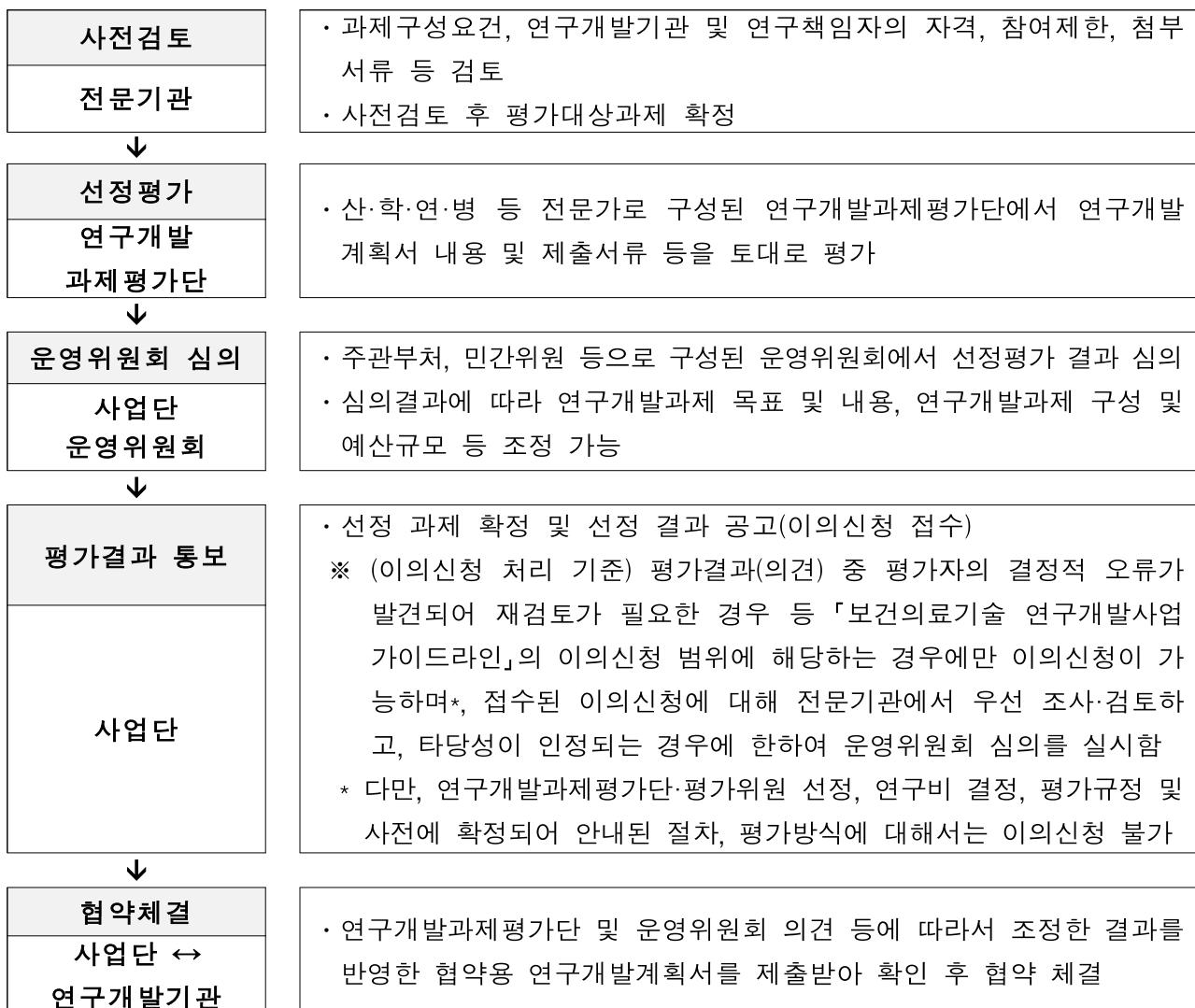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이 원칙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시험 · 분석 · 검사 · 임상 등은 용역연구로 수행가능하며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에 계상. 본 사업은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취득 원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라 계상

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공고 불임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IV.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① 평가 절차



②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가.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이 되며,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의 이메일로 통보 (발표평가 비 대상 과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발표자료 제출 기한은 서면평가 후 발표 일정과 함께 연구책임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발표평가 당일 질의응답(Q&A) 진행됨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및 내용	배점
연구 개발 계획 (30)	① 연구개발과제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적 가치)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됨- (시급성) 대상질환의 중요성(사망률, 질병부담, 사회적 비용 등) 및 환자 예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급히 수행해야하는가	10
	② 연구의 혁신성·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법인가	10
	③ 연구목표의 구체성,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서(RFP)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가-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측정가능하며 달성 가능한가- 연구범위가 목표 달성을 부합하고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10
연구 수행 방법 및 내용 (40)	④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체계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설계(연구기간, 대상자 수, 임상 연구 방법, 안전관리 등)에 따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가	20
	⑤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비(임상연구 소요예상 비용 등)의 합리적 산출	20
연구 수행 능력 (20)	⑥ 연구수행자의 전문성 및 운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경험, 전문성 및 기술력 보유 정도 등 연구역량-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데이터 유실, 연구윤리 문제, 자원부족,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능력	15
	⑦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보유·협력 인프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조직 및 인프라 보유	5
연구 개발 기대 성과 (10)	⑧ 성과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과 확산 계획 마련 여부- 예상되는 성과가 임상현장에 적용될 가능성- 후속 연구(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 인용 등 성과활용 계획의 구체성- 연구성과가 재생의료산업 발전 등 활용 가능성(제품화, 실용화 등)- 연구결과가 치료 활용, 국민건강증진, 질병극복,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	10
총 계		100

V. 향후 연구사업 관리

① 협약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 입원 등), 퇴직, 부서 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다만,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 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협약 변경 요청

② 중간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를 해당년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함
- 사업단에서는 각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 후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은 필요 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및 새로운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④ 성과관리

□ 연구성과활용 현황의 보고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등록증 사본, 기타 시제품, 제품화 등)과 이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연구성과의 홍보

-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

-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RS-2025-02183112).”
-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RS-2025-02183112).”

○ 연구종료 전 · 후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 · 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입력함

- ※ 향후 과제관리 등 공모안내서와 RFP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총괄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
 - * (평가관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평가지침
 - * (연구비 관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 *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연구노트 관련)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 (성과관리 관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 지원 제외 처리기준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 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격, 신청과제의 목적 및 내용이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VI.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등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VII. 문의처

①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② 문의처

-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구 분	공고단위(RFP)	사업내용(RFP)안내		평가 일정/절차 안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1.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오수경	cr@ rmaf.kr	오수경	cr@ rmaf.kr
	1-2.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1-3.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2-1.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